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39

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박 정·서영석·장철민

김태선 · 허 영 · 이재강

차규근 • 김정호 • 윤준병

위성곤 · 김영환 · 한민수

박홍배 · 김영진 · 송옥주

황정아 • 권향엽 • 안도걸

소병훈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임호선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 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,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 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 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.

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,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

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.

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,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,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,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34조의2 신설).
- 나.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 (프로그램 단위)으로 명확히 함(안 제35조의2 신설, 안 제69조).
- 다.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,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(안 제43조제5항).
- 라.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51조의2).

- 마.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55조의2 신설).
- 바.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2(세입예산안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0월에 경제전망을 실시한 후 제33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안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방법과 그 근거, 세입예산안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35조의2(예산안의 증액 동의)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장· 관·항(제21조제3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장·관·항을 말한다)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 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지방교부세
- 2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1조의2(예비비 사용 내역의 분기별 국회제출)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5조의2(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
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과 그 근거,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한다.

제69조의 제목 중 "증액"을 "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주요항목"을 "주요항목(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목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세입예산안의 재추계
	및 보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
	관은 매년 10월에 경제전망을
	실시한 후 제33조에 따라 국회
	에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재추
	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회 예
	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
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	<u>다.</u>
	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0
	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라 실
	시한 세입예산안 재추계의 분
	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
	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
	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
	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과
	그 근거, 세입예산안과 재추계
	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
	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
	포함되어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예산안의 증액 동의)
	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
	의 장・관・항(제21조제3항에

제43조(예산의 배정) ① ~ ④ 저 (생 략)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,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-	따른 세출예산의 장・관・항을
-	말한다) 지출금액을 증액하거
-	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
-	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
	를 얻어야 한다.
세.	43조(예산의 배정) ① ~ ④
((현행과 같음)
(5
-	
-	
-	
-	
-	
-	
-	
-	<u>다만, 다음 각 호</u>
_	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
-	아니하다.
-	1.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른 지
	<u>방교부세</u>
4	2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
	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
세.	51조의2(예비비 사용 내역의
-	분기별 국회제출) 각 중앙관서
_	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의 사
	용 내역을 부기만류익이 속하

<신 설>

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55조의2(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시 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 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보고 서에는 세입추계 방법과 그 근 거,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 야 한다. -----주요항목(제6 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 목을 말한다)-----

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 지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 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 략)

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
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
의 재추계 결과 세입 징수액
이 세입예산 대비 100분의 5
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
등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
<u>는 경우</u>
② (현행과 같음)